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4호 및 제36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의 세부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4호 및 제3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종시(예정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설하는 주택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 및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설립 허가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 민간단체”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5. “중앙행정기관 유관 협력단체 등”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 협회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6. “종사자”란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특별공급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자로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마.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제5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특별공급대상기관에 임용된 자
7. “예정지역”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조(특별공급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대상자(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시 이외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중 종사자가 20인 이상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세종시에 소재한 산업단지로 이전 또는 입주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계획에 따른 업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의 종사자(입주기업은 본사가 세종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종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소속기관 또는 사무소만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10인 이상의 종사자를 둔 중앙단위(지부·지회는 제외한다)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중 시장과 양해각서(MOU) 체결 또는 공모 등에 선정된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종사자
4.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소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허가 또는 등록된 유관 협력단체 중 시장과 양해각서(MOU) 체결한 유관협력단체의 종사자

제4조(특별공급 대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세종시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한한다.

제5조(청약자격) ①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파견자와 휴직자의 특별공급자격 여부는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장이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제3조제1호(기업)인 경우, 고시일 이후 준공 또는 임대 계약을 한 기업으로서 투자사업장의 종사자가 20인 이상으로 확정된 날(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8호에 의하여 시장에게 확인요청 필요)
2. 제3조제2호(국가 및 공공기관)인 경우 이전이 확정된 날(이전계획 고시일, 업무용 건축부지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일)
3. 제3조제3호(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및 제4호(중앙행정기관 유관 협력단체 등)인 경우 업무용 건축 준공일이거나 기존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매입일 또는 임대차 계약일
4. 제3조제2호(국가 및 공공기관), 제3조제3호(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및 제4호(중앙행정기관 유관 협력단체 등) 중 조직 일부만 이전하여 특별공급 대상자가 미확정인 경우, 해당 조직 일부가 이전설치 또는 업무개시 한 날

②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해당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당해기관이 이전하는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함) 현재 주택 특별공급대상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택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1호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월(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을 말함) 이전에 정년 퇴직, 인사 이동

등의 사유로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자를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 시장은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특별공급 대상자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공급 신청·접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 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주체의 협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이 정한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자 추천 및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3조의 특별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별지 제5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추천대상자를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추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추천순위 산정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추천순위 명부에 따라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추천 순위를 부여한다.

1. 재직기간이 장기인 자
2.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3.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기준으로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10조(입주대상자 선정 취소 등) ① 제9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을 포함한다)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입주시에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의 공급계약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공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시일(2018.12.7.) 이후 준공 또는 임대계약을 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별지 서식 >

- [별지 제1호]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 [별지 제2호] 무주택 서약서
-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4호] 주택 특별공급 추천순위 산정 배점기준표(제출용)
- [별지 제5호] 주택 특별공급 추천순위 산정 배점기준표(확인용)
- [별지 제6호] 주택 특별공급 추천순위 명부
- [별지 제7호] 주택 특별공급 추천서
- [별지 제8호] 주택특별공급 대상기업 확인서(기업용)

[별지 제1호]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1. 신청인 및 소속업체 기재사항

신청인	성명		연락처	TEL
	주민번호			H.P
	주소			
소속 회사	회사명		상시종사자수	명
	업종		연락처	
	사업자번호		주소	

※ 기업의 경우 소속회사 내용은 세종시 사업장으로 작성

2. 신청자 가족상황(본인.배우자.세대원 전원 기재)

관계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3. 주택신청내역

지구명(블록명)	전용면적(m ²)	비고

4. 신청인 경력사항 등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	--

본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상기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기관명 :

대표자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 1
3.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소속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각 1부
7. 양해각서(MOU) 1부 ※ 기업은 생략
8. 법인인감증명서(기업의 경우 제출) 1부
9. 주택특별공급 대상기업 확인서(기업의 경우 제출) 1부
10. 기타 시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무주택 서약서

본인은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장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소유여부 확인,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계약의 취소는 물론, 입주자저축의 해약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음

(인)

※ 무주택 확인 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인)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본 신청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추천(확인)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추천(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정보

개인식별 정보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수집 및 이용목적	우선공급 추천 대상자 통보(해당 건설사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자 추천(확인) 후 3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등 주택우선공급 추천(확인) 신청에 필요한 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주택우선공급 추천(확인)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해야만 추천(확인)이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추천(확인) 신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주택 특별공급 추천순위 산정 배점기준표(제출용)

배점항목	총배점	배 점 기 준		점수	비 고
		기 준	배점		
합 계	100		100		
재 직 기 간	60	10년 이상	60		현재 소속회사의 재직기간만 인정함
		9년 이상 ~ 10년 미만	58		
		8년 이상 ~ 9년 미만	56		
		7년 이상 ~ 8년 미만	54		
		6년 이상 ~ 7년 미만	52		
		5년 이상 ~ 6년 미만	50		
		4년 이상 ~ 5년 미만	48		
		3년 이상 ~ 4년 미만	46		
		2년 이상 ~ 3년 미만	44		
		1년 이상 ~ 2년 미만	42		
		1년 미만	40		
부 양 가 족 수	40	5명 이상	40		부양가족 인정적용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8호 나목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4명	36		
		3명	32		
		2명	28		
		1명	24		
		0명	20		
가 점	5	미성년자 자녀수 3명 이상	5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자 -배점(100점) 범위 내 에서 부여
		미성년자 자녀수 2명 이상	3		

※ 배점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제9조 제3항에 따른다.

(신청자) 소속

성명

(인)

[별지 제5호]

주택 특별공급 추천순위 산정 배점기준표(확인용)

소속명		신청자명						
배점항목		총배점		배 점 기 준		점수	비 고	
				기 준	배점			
합 계		100				100		
	재 직 기 간	60	10년 이상		60		현재 소속회사의 재직기간만 인정함	
			9년 이상 ~ 10년 미만		58			
			8년 이상 ~ 9년 미만		56			
			7년 이상 ~ 8년 미만		54			
			6년 이상 ~ 7년 미만		52			
			5년 이상 ~ 6년 미만		50			
			4년 이상 ~ 5년 미만		48			
			3년 이상 ~ 4년 미만		46			
			2년 이상 ~ 3년 미만		44			
			1년 이상 ~ 2년 미만		42			
		1년 미만		40				
	부양 가족 수	40	5명 이상		40		부양가족 인정적용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8호 나목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4명		36			
			3명		32			
			2명		28			
			1명		24			
			0명		20			
가점		5	미성년자 자녀수 3명 이상		5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자 -배점(100점) 범위 내 에서 부여	
		미성년자 자녀수 2명 이상		3				

※ 배점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제9조 제3항에 따른다.

(확인자)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

주택 특별공급 추천순위 명부

[illegible]

[별지 제7호]

주택 특별공급 추천서

추천 순위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별지 제8호]

주택특별공급 대상기업 확인서(기업용)

1. 기업현황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2. 세종시 사업장 현황

종사자수	명	20인 이상 종사자 확정일	20 년 월 일
업 종		연락처	
사업자번호		주 소	

본 기업은 「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첨부서류>

1. 종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증명 중 택 1
2. 준공서류, 사업장 매입·임대 계약서 중 사본 1부